제19장 협력

제19.1조 적용범위

- 1. 당사국들은, 그들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경제규모를 고려하여, 이 장의 목적의 이행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, 특히 경제적, 기술적 및 상업적 협력에 주의하여, 모든 형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.
- 2. 이 장에 따른 당사국들 간 협력은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그 밖의 양자적 협력 메커니즘 에 규정된 당사국들 간 협력 및 협력활동을 보완할 것이다.
- 3. 당사국들은 이 장에서 발굴된 분야의 협력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. 그러나, 이는 다른 부문 또는 영역의 포함에 대하여 제한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.

제19.2조 목적

- 이 장의 목적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는 긴밀한 협력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이다.
 - 가. 이 협정의 기회와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
 - 나. 양자적, 지역적 또는 다자적 수준에서 협력을 개발하는 것
 - 다.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는 것
 - 라.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,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,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
 - 마. 소상공인·중소기업이 국제 무역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 상공인·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
 - 바. 당사국들 간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협력활동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
 - 사. 국제 시장에서 당사국들과 그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 확대를 장려하는 것, 그리고
 - 아. 자국의 정책과 개발전략에 규정된 우선순위를 이행하도록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것

제19.3조 방법 및 수단

1. 당사국들 간 협력은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규칙과 절차에 따라,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도구,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행될 것이다.

2. 특히, 사업의 선별, 개발 및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정보,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, 기술 지원, 그리고 특히 3자 간 협력을 포함하는 상환 및 비상환 재정적 협력과 같은 수단 및 세부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9.4조 협력위원회

- 1.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2. 이 장의 목적상,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.
 - 가. 당사국들 간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발전시키는 것
 - 나. 협력 발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
 - 다.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
 - 라. 협력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
 - 마. 협력 프로그램,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을 점검하는 것
 - 바. 협력 프로그램,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의 목적을 이행하고 달성할 것을 보장하는 것
 - 사. 당사국들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 프로그램,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 제시를 위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. 그리고
 - 아. 공동위원회가 위임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
- 3.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.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9.5조 접촉선

- 1. 당사국들은 가능한 협력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. 접촉선은 이 장의 운용을 위하여 그들의 정부기관, 비즈니스 분야 대표,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 관과 함께 작업할 의무를 가질 것이다.
- 2.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, 다음의 접촉선이 지정된다.
 - 가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
 - 나. 코스타리카의 경우, 대외무역부(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)
 - 다. 엘살바도르의 경우, 경제부(Ministerio de Economía)

- 라. 온두라스의 경우, 경제개발부(Secretaría de Desarrollo Económico)
- 마. 니카라과의 경우, 산업통상개발부(Ministerio de Fomento, Industria y Comercio), 그리고
- 바. 파나마의 경우, 산업통상부(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)

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또는 당사국들이 통보하는 부서

제19.6조 협력분야

- 1. 당사국들은 다음의 분야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상호 유익한 조건을 통한 협력의 수단 및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.
 - 가. 소상공인 · 중소기업
 - 나. 문화(관광 및 시청각 서비스 포함)
 - 다. 더 우호적인 기업환경 증진
 - 라. 보건의료 산업
 - 마. 농업, 축산(농공업 포함)
 - 바. 산업 및 상업(섬유 및 의류)
 - 사. 과학 및 기술(정보기술 및 통신 포함)
 - 아. 운송, 물류 및 유통
 - 자. 무역 및 지속 가능한 개발(산림 및 재생에너지 포함)
 - 차. 어업 및 양식
 - 카. 금융서비스 분야, 그리고
 - 타.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분야
- 2.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다른 장에 규정된 협력 활동 또는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제1항에 기술된 분야의 협력을 개발하고, 촉진하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제19.7조 분쟁 해결

¹이 호는 온두라스에만 적용된다.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22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

부속서 19-가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협력

당사국들은 특히 다음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- 가. 소상공인·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생산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함에 있어 협력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
- 나. 관리 기술 개발, 기술이전, 제품 품질 개선, 글로벌 가치 사슬 연계, 공급자 개발, 정보기술, 금융 및 기술지원으로의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소상공인 ·중소기업이 협력 및/또는 모범관행의 공유를 촉진할 네트워킹 기회를 설립하 는 것, 그리고
- 다. 당사국들의 소상공인 · 중소기업의 상호 발전과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것

부속서 19-나 시청각 공동제작 및 서비스

제1조 시청각 공동제작

- 1. 영화, 애니메이션 및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역에서의 시청각 공동제작이 당사국들 간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, 그리고 이해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, 당사국들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의 협상을 고려하는 데 합의한다.
- 2. 제1항에 따른 공동제작협정은 발효 2 후,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며, 오로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.
- 3.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은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³ 간에 교섭될 것이다.

제2조 시청각 서비스

- 1. 당사국들은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하여, 특히 교육, 정보 교환, 전문성 및 경험 교류, 그리고 기술과 노하우의 활용과 이전 분야에서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- 2. 당사국들은 시청각 분야의 발전을 장려할 목적으로, 기술지원과 시청각 분야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제작과 교류를 촉진할 기회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3.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협력은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

² 공동제작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.

³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말한다.

나. 파나마의 경우, 산업통상부(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), 영화시청각산업총국(Dirección General de l a Industria Cinematográfica y Audiovisual) 그리고

다. 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의 경우, 제 21.3 조(접촉선)에 따라 접촉선이 통보한 당국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

부속서 19-다 기업환경 개선

- 1.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더호의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2.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당사국들은 협력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기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.
- 3. 이 부속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, 협력위원회는
 - 가. 당사국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논의할 수 있다. 그리고
 - 나. 당사국들의 정부기관 이외의 관련 기관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.

부속서 19-라 보건산업협력

- 1. 당사국들은 공중보건 증진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포함한 보건산업 분야에서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.
- 2. 보건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 - 가. 다음에 관한 정보교환
 - 1)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등록, 수입,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법, 규정 및 결의안, 그리고
 - 2)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학회, 세미나, 워크숍, 전시회,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
 - 나.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교류, 세미나, 회의, 워크숍 및 강좌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한 역량 강화
 - 1)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등록 절차, 그리고
 - 2) 제약 산업의 다른 생산 지역에 관한 약학 학위가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 및 학생 대상 인턴쉽
 - 다. 다음에 관한 관련 민간부문에서의 협력
 - 1) 연구원, 학생 및 관련 산업 관계자의 교류
 - 2)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
 - 3) 제품 품질 개선, 공급망 연계, 기술교역 등, 그리고
 - 4) 상호투자 기회의 증진 및 촉진